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표 3 제1호)

-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신규교육의 교육·훈련 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별표 1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라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각각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u>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u>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u>전문기관</u> 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u>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u>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을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④ ----- ----- ----- -----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 -----		

야 한다.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신규발급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